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

안녕하십니까? 박순규 의원입니다.

지난 2월 5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립학교의 운동장,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인근 주민, 단체 등이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타 지역 단체의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이 학교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,

장기 사용에 한하여 신청자의 사용시간대가 겹칠 경우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학교 소재 자치구 주민이 우선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
바라며,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
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